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50005(본소), 2020나5001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C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1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소163632(본소), 2019

가소303749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법무법인 C는 공동하여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246,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C에게 681,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법무법인 C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소송위임계약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C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D 외 4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상고심(수원지방법원 E, 대법원 F), 원고가 G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항소심, 상고심(서울서부지방법원 H, 서울서부지방법원 I, 대법원 J), K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하 ‘제3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L)에 관하여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C의 소속 변호사인 피고 B이 위 사건들을 담당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송비용확정결정

원고는 주식회사 D, M, N, O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 법원은 2019. 1. 4. “제1사건의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322,77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은 2019. 2. 18.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1) 2018. 7. 16.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을 피고 법무법인 C로 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채권자 겸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피고 B

1.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소송대리 수임료 미지급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채무자들(M, N, O)간의 제1사건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 대하여 원고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소송비용확정채권액 전액을 피고 법무법인 C에 양도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채권 양도의 통지권한을 피고 법무법인 C에 위임한다.

(2) 피고 법무법인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송에서 이겨서 받게 될 소송비용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임계약서의 수임료를 부풀려서 다시 작성하고 원고가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을 믿고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인감도장을 맡겼다. 피고 B은 원고가 맡겨둔

도장 등으로 임의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C는 이후 양수인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 13,246,777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 B은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소송비용확정채권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마치 미지급 수임료가 있어 이를 지급받기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챙겼으므로 위 13,246,77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F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 착수금이 3,300,000원에서 11,000,000원으로 증액된 위임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 제3사건에 관하여도 당초 위임계약서상의 성과보수란이 공란이었는데 이후 성과보수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된 위임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소송위임계약을 변경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18. 7. 16.경 일부 사건의 착수보수 및 성공보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소송위임계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미지급 수임료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법무법인 C와 원고 사이에서 소송비용확정채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제1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보수와 제3사건의 보수는 전부 지급하였으나(제1사건 상고심의 경우 당초의 착수보수인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사건의 제1심 착수보수는 11,000,000원 중 5,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500,000원 및 항소심의 착수보수 5,5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② 한편 2018. 7. 13. 제1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의 승소판결 확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 B은 2018. 7. 16. 오전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 피고 B: 통화 관찮으세요? 수임료 관련해가지고, 전에 사장님이 형편이 좀 그래서, 했었

잖아요. 근데 요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쪽에서 G 사장한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로 대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가지고요.

○ 원고: 아, 전에, 요번에, 저,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제2사건) 말이죠?

○ 피고 B: 아니, 대법원(제1사건)도 그렇고, 전에 거도 그렇고,

○ 원고: 아니, 변호사님. 전에 내가 뭔가 돈을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수원(제1사건) 끝나고 나서.

○ 피고 B: 아니 그거는 형편이 그러셔서 원래 받는 것보다 적게 받은 거였고요.

○ 원고: 처음에 330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220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1,100만 원 내가 넣어드렸습니다. 끝나고나서.

○ 피고 B: 아니, 수원(제1사건) 항소심이 처음에 이제 1,100으로 해가지고, 550, 550 줬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대한 거.

○ 원고: 대법원에 대한 거 제가 330 넣어드렸는데,

○ 피고 B: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을 제가 원래 1,100 받는 건데 그때 형편이 그러시다고 하셔서 330에 그렇게 했었는데 (중략) 만약에 이 소송비용확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면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 원고: 아~ 네. 그럼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애깁니까?

○ 피고 B: 아니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 피고 B: 지금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 원고: 네, 맞습니다.

○ 피고 B: 그러니까 이거를 채권양도를 미리 받아놔야될 것 같아요. 미리 저한테 채권양도를 해주시고, 저희 사무소에서 이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받고요. 이제 못 받으면

○ 원고: 아, 네. 무슨 애긴지 알겠습니다.

○ 피고 B: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제1사건 상고심) 위임계약서도

○ 원고: 네. 새로 이제?

○ 피고 B: 예, 전에 33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100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원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③ 피고 B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 피고 B: 그래서 양도양수할 때 도장 찍어야 돼서. 사무실로 오셔서 도장을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으세요.

○ 원고: 네, 그러면 내일 오후나 한 번 갈까요?

○ 피고 B: 네, 그러시면 돼요. 아침, 그리고 오실 때, 전에 대법원 했던 그 수임계약서(제1사건의 상고심)하고 그 다음에 그 K씨 수임계약서(제3사건) 있죠. 그거 두 개 좀 가지고 오세요.

○ 원고: 네, 알겠습니다.

④ 위와 같이 피고 B은 2018. 7. 16. 오전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수임료’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자 함을 밝혔으며, 원고는 처음에 수임료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제1사건 상고심의 수임료를 원래보다 적게 받은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임료를 원래 금액인 11,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소송비용확정채권의 양도로 수임료 지급을 대체하자는 취지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1사건 상고심의 수임계약서 외에 제3사건의 수임계약서도 가져오라는 피고 B의 말에 응하였는바, 제3사건에 관하여도 수임료를 증액하고 그 지급을 위해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웅기, 판사 신재환, 판사 김정민

1) 원고는 ‘공동하여’를 누락하였으나 선해한다.

2) 피고 법무법인 C가 2021. 11. 4.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서류들(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이라는 표목을 붙인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다.